



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금융감독원

수신 수신처 참조
(경유)

사본수신 사본수신처 참조

제목 금융회사의 외부 자문시 개인정보 등 제공 관련 유의사항 안내 요청

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금융회사가 법무법인 또는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그대로 송부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3.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4조 등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이용자(제공자)가 개인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정보주체로부터 사전 동의 등을 받도록 하고 있고, 그 경우 개인정보에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시키고 있는바, 금융회사 등이 외부 자문을 위해 법무법인 등에게 개인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상기와 같이 사례 및 유의사항을 전달하오니 귀 기관 소속 금융회사 등에 통보하여 향후 외부 자문 등을 받는 경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개인신용정보 보호에 유의할 수 있도록 당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금융감독원장



수신처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생명보험협회 회장, 손해보험협회 회장, 한국여신금융협회 회장,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회장,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산림조합중앙회 회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 수협중앙회장

사본수신처 보험감독국 보험총괄팀, 은행감독국 은행총괄팀, 저축은행감독국 저축은행총괄팀, 상호여전감독국 상호금융감독팀, 상호여전감독국 여전감독총괄팀, 금융투자감독국 금융투자총괄팀, 소비자보호총괄국 총괄기획팀, IT·금융정보보호단 금융정보보호팀, IT·금융정보보호단 신용정보1팀, 자산운용감독실 자산운용총괄팀, 대부업검사실 검사기획팀

담당부서 금융민원실 (중소서민금융민원팀)

선임조사역

김광형

팀장

이창운

실장

전결 2015.11.24.

이갑주

합의자

시행 금민중서-00900 (2015.11.24.)

우 0732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 <http://www.fss.or.kr>

전화번호 02-3145-5725 팩스번호 02-3145-5777

/ kkh986@fss.or.kr

/ 비공개(5)

"창의적 금융, 비조치의견서로 도와드립니다."
